

상대방용

준비서면

사건 2005가합 17421호

교수지위확인

원고 김명호

피고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위 당사자간 교수지위확인 사건에 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음



1. 원고는 이 사건 재임용거부가 성균관대학교의 수학 본고사 문제의 오류지적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피고는 본고사 문제에 오류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는 것은 정당하고, 오류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 학술적이 측면에서의 논의는 적법할 뿐 아니라 오히려 권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위 문제의 오류가능성을 지적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보복하기 위해 재임용을 거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원고는 자신의 재임용거부에 대한 나머지 사유를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위 보복문제만을 부각시키는 것이고, 일부언론에 이 사건을 알려 피고가 보복적으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인양 사건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2. 원고는 성균관대학교 교무처장이 출석 및 학업에 충실히 않았던 학생에게

인정학점을 수여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체육특기자들이 각종대회 출전으로 인하여 부득이 수업에 출석치 못한 경우에 한하여 위 조치를 취해 달라고 당부한 것일 뿐(갑제21호증), 원고와 같이 모든 학생에 대하여 출석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학점을 부여하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3. 원고는 재임용 심사용 제출 논문이 SCI에 등록된 논문집에 게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논문이 매우 우수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갑제5호증에 의하면 2002년 우리나라 과학기술부분의 연구자들이 1년동안 SCI에 게재한 논문이 17,785편인바, 그렇다면 위 논문이 다른 논문보다 우수하다고 볼 자료는 전혀 없습니다.

서 증 목 록

- | | |
|-------------|--------------------|
| 1. 을제3호증의 1 | 재심사건 변명자료 제출 |
| 1. 2 | 목차 |
| 1. 을제4호증 | 변명서 |
| 1. 을제5호증 | 증빙자료 |
| 1. 을제6호증의 1 | 수학과 1차 증빙 |
| 1. 2 | 시험거부에 대한 교수들의 인지사항 |
| 1. 3 | 징계 청원 사유 |
| 1. 4 | 학사질서 문란행위 |
| 1. 5 | 타 교수 비방 |
| 1. 6 | 교육자 자질 의혹 |
| 1. 을제7호증의 1 | 2차 증빙서류 |
| 1. 2 | 징계사유 설명서 |



1. 을제8호증의 1 3차 증빙서류
1. 2 1994년 1학기 집합론
1. 3 성적열람
1. 4 1994년 2학기 위상수학Ⅱ
1. 5 성적열람
1. 6 1995년 1학기 위상수학 I
1. 을제9호증의 1 4차 증빙서류
1. 2 내지 9 진술서
1. 을제10호증의 1 교정위의 보충자료 요청에 대한 확인진술 및 증거
1. 2내지 3 직무상 의무의 위반 및 태만
1. 을제11호증의 1 성적기록표 표지
1. 2 내지 10 성적열람
1. 을제12호증의 1 총장 공한 발송
1. 2 학·처장 회의록
1. 3 학·처장 회의 자료
1. 4 전공필수의 보충강의의 건
1. 5내지 6 보충강의 개설에 관한 건
1. 7 하계강좌 별도 개설
1. 8 성적기록표
1. 9 신문자료
1. 10 세미나 자료
1. 을제13호증의 1 전체교수세미나 참석 현황
1. 2 확인서
1. 3 회의결과 보고



1. 3 회의결과 보고
1. 4 교원징계 위원회 회의록
1. 5 회의결과 보고
1. 6 교원징계 회의록
1. 7 회의결과 보고
1. 8 교원징계 회의록
1. 9 회의결과 보고
1. 10 교원징계 회의록
1. 11 교정원 위원 임명 및 통보
1. 12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1. 13 교원징계 의결 결과 통보
1. 14 징계의결서
1. 15 교원징계 의결결과에 대한 인사조치 통보
1. 16 교원징계 의결결과에 대한 인사조치

2005. 7.

피고 소송대리인 **일신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 재 원

정 재 응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3부

귀 중